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12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박해철 • 박지원 • 김동아

허성무 • 조인철 • 이병진

이재강 · 최민희 · 박용갑

이수진 · 임호선 · 김 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 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직업성 질병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재해조사나 역학조사 장기화로 인한 산재판정 지연에 따라 현행법의 목적인 신속한 재해보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산재판정 장기화는 노동자와 유가족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하고 수 년간 판정 결과만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심지어 판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목숨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 3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보험급여 신청 후 업무상 질병의 경우 90일, 역학조사 등 전문적 조사를실시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신청자의 명시적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급의 구체적인 요건, 청구 절차, 방법,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의3(우선 지급금의 환수) ① 공단은 제82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를 우선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보험급여 신청 후 업무상 질병
	의 경우 90일, 역학조사 등 전
	문적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8
	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 여
	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신청자의 명시
	적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우
	선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급의
	구체적인 요건, 청구 절차, 방
	법,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82조의3(우선 지급금의 환수)
	① 공단은 제82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받은 자
	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
	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환수
	<u>할 수 있다.</u>
	②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